

미래성장 아이템 발굴 컨설팅 사업 세부 시행 공고

화성시와 화성상공회의소는 화성지역 관내 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 기존의 산업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가능한 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『미래성장 아이템 발굴 컨설팅 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21일

화성시 · 화성상공회의소

미래성장 아이템 발굴 컨설팅 사업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미래성장 아이템 발굴 컨설팅 사업
- 나. 사업기간 : 2020년 2월 ~ 12월
- 다. 사업내용 : 지원기업의 아이디어 발굴에서 사업화 분야까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컨설팅비 지원 (※ 신청시 컨설팅 업체를 지정 공모)
- 라. 지원대상 : 관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
(단, 전년도 기준 100억이상 매출 달성 제조기업에 한함)
- 마. 지원규모 : 2개사
- 바. 지원금액 : 기업당 4,000만원 ※기업 자부담 비용 : 1,000만원(부가세별도)이상

2. 지원내용

- 가. 지원방법 : 미래성장아이템발굴을 위한 컨설팅비 지원 (컨설팅기간: 6개월 이내)
※ 신청기업에서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공동공모

나. 지원내용

컨설팅 주요 내용	
- 지원금액 : 기업 당 40,000천원 이내 (VAT포함) ※ 기업 자부담 10,000천원(VAT제외) 이상	
- 기업역량 분석에서 아이템 도출에 이르는 전 단계에 발생하는 프로세스 검토	
- 기업 보유 기술과 추가 기술 도입을 통해 진입 가능 분야 선정	
- 관련 컨소시엄을 통해 진입 가능 분야 선정	
- 기업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 특허 동향을 분석	
- 기술 및 정책 동향을 통하여 시장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	
- 기 분석된 특허/수출/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진입장벽을 분석	
- 기업과 진입장벽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3~5개의 최종 유망 아이템 선정	
- 최종 신규아이템을 위한 공공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(R&D연계) 지원	

다. 신청자격

- 지원업체 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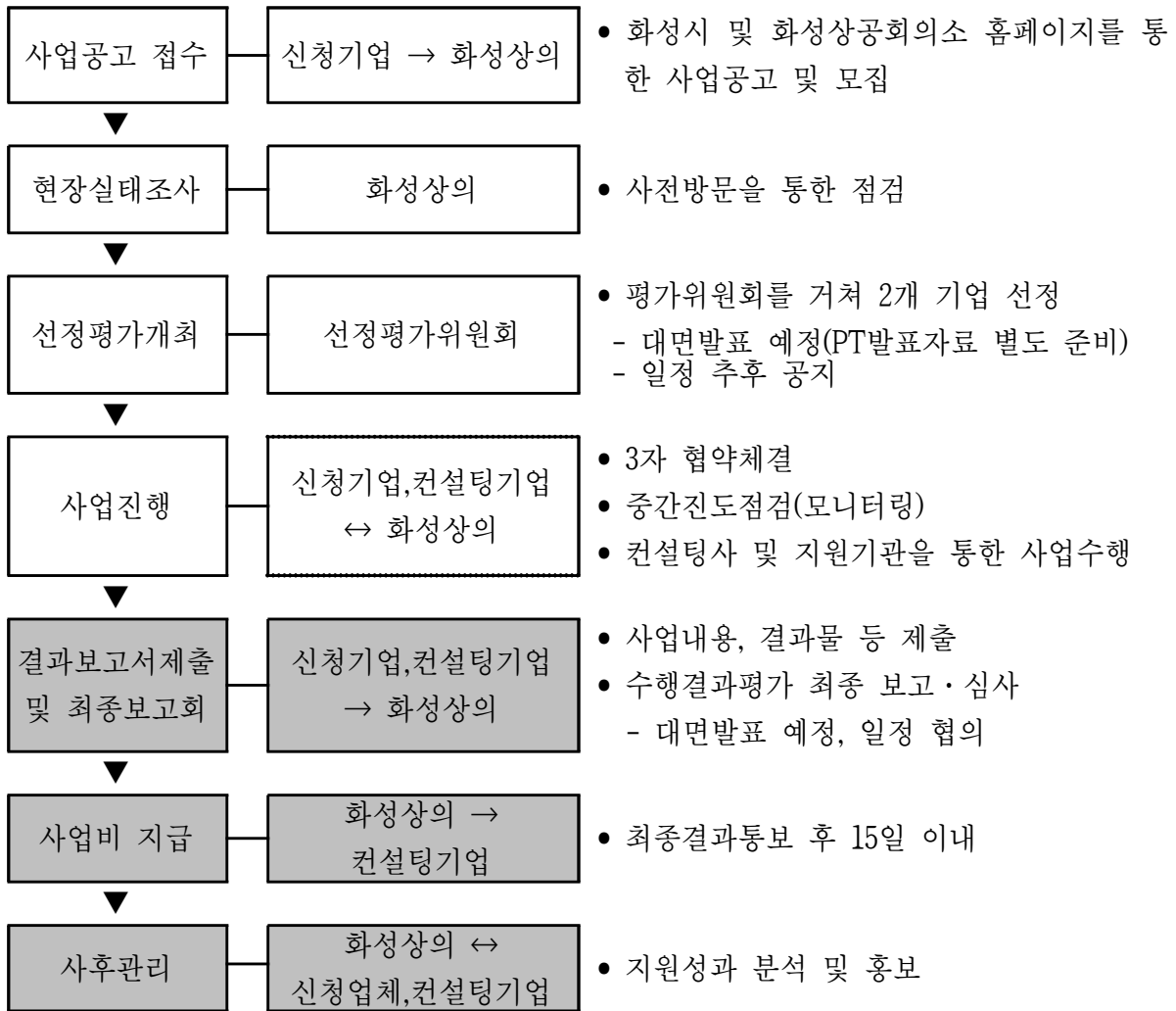
- ① 관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
- ② 직전년도 100억이상 매출을 달성한 제조기업

※ ①,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컨설팅 업체를 지정하여 **공동공모** 하여야 함

- 컨설팅 업체 자격요건

구 분	자 격 기 준
기 본 자 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에 따라 신고한 ‘연구개발서비스업’ 기관 중 영리기관 *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은 제외
전 문 인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거래·기술성 및 사업성 분석·특허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사급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, 전문인력 또는 그 밖의 인력 중에서 변리사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기술거래사, 기술사, 경영·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반드시 3명은 보유한 기관 * 상기 인력은 상시근로자 기준(국민연금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) * 변리사, 기술거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
사 업 실 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3년 이내 기술평가 및 거래, 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 대상 R&D 기획 관련으로 10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기관 * 사업실적은 공고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(해당기업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) * 자금융자 및 기술평가를 위한 단순 컨설팅 지원은 R&D기획 실적으로 불인정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결과 B등급 이상(유효기간은 사업공고일 기준) ○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규제받고 있지 아니한 기관 ○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기관 ○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제재조치 중에 있지 아니한 기관 * 컨소시엄 구성 기획기관은 제외

3. 지원절차



※ 사업비 지급(선지급 불가)

- 1) 기업부담금은 사업협약 후 컨설팅 업체에 선지급을 원칙으로 함.
- 2) 결과보고서 검토 및 최종보고회 완료 후 화성상의 지원금은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하며, 정산에 필요한 제출자료 함께 제출
: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, 화성상공회의소 지원금 지출서류(세금계산서, 통장사본), 기업 부담금 지출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입금확인증 등)
- 3) 지원금은 부가세(VAT)포함 금액임
- 4) 최종보고회를 통해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보여 질 경우(불성실수행) 사업비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음.

불성실 수행 예시

- 기업 보유 기술과 추가 기술 도입을 통해 진입 가능 분야 선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
- 신규아이템을 위한 공공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(R&D연계) 방안이 현실성이 없는 경우
-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의 사업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수행했을 경우
- 최종보고회 불참 및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

4. 지원업체 선정방법

가. 선정방법 : 선정평가위원회 점수 고득점 순 2개 업체 선정
(단, 선정평가점수 70점이상 업체 지원)

나.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: 4월 ~ 5월 中 별도 통보 예정 (PT발표)

다. 선정결과 발표 : 개별 기업 통보

라. 심사기준표

구분	서류심사 평가항목				배점											
정량	신청기업 (10점)	◎최근 3년 매출평균성장률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점수</td> <td>5점</td> <td>4점</td> <td>3점</td> <td>2점</td> </tr> <tr> <td>%</td> <td>10.1이상</td> <td>10~5.1</td> <td>5~1</td> <td>1미만</td> </tr> </table>			점수	5점	4점	3점	2점	%	10.1이상	10~5.1	5~1	1미만	5
		점수	5점	4점	3점	2점										
	%	10.1이상	10~5.1	5~1	1미만											
	※ 결산 기준 16년 ~ 18년 매출액															
컨설팅기업 (10점)	◎최근 3년 평균고용성장률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점수</td> <td>5점</td> <td>4점</td> <td>3점</td> <td>2점</td> </tr> <tr> <td>%</td> <td>10.1이상</td> <td>10~5.1</td> <td>5~1</td> <td>1미만</td> </tr> </table>			점수	5점	4점	3점	2점	%	10.1이상	10~5.1	5~1	1미만	5	
		점수	5점	4점	3점	2점										
%	10.1이상	10~5.1	5~1	1미만												
※ 건강보험 산출 내역 인원 (16년 12월, 17년 12월, 18년 12월)																
정성	기술능력 (80점)	◎ 전문인력보유현황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점수</td> <td>5점</td> <td>4점</td> <td>3점</td> <td>2점</td> </tr> <tr> <td>명수</td> <td>8명이상</td> <td>7명~6명</td> <td>5명~4명</td> <td>3명</td> </tr> </table>			점수	5점	4점	3점	2점	명수	8명이상	7명~6명	5명~4명	3명	5
		점수	5점	4점	3점	2점										
	명수	8명이상	7명~6명	5명~4명	3명											
※ 4대보험 가입 된 해당 자격 소지자																
◎ 최근 3년간 유사용역 단일 프로젝트 5천만원 이상 수행경험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점수</td> <td>5점</td> <td>4점</td> <td>3점</td> </tr> <tr> <td>건수</td> <td>3건</td> <td>2건</td> <td>1건</td> </tr> </table>			점수	5점	4점	3점	건수	3건	2건	1건	5				
점수	5점	4점	3점													
건수	3건	2건	1건													
※ 기술평가 및 거래, 사업화 지원 등																
총점	사회공헌 (5점)	◎ 권설팅 사업의 개요 [신청서 1~5]			25											
		- 미래성장아이템발굴 및 개발 필요성 (신청기업 분석 및 기업니즈, 신규 아이템 선정 및 개발 필요성, 맞춤형 BM기획에 따른 신규 아이템 발굴)														
		- 국내 정책 동향 분석 (시장성과 성장가능성 분석, 아이템별 진입장벽 분석 등)														
- 신규 아이템 타당성 분석(신규아이템 발굴의 적절성 등)			30													
- 사업비 책정의 적절성																
◎ 권설팅 추진계획 [신청서 6]																
-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		25													
- 추진방법의 절차 및 합리성																
- 추진체계 및 인력배분의 적절성																
- 산출물의 적합성, 구체성 및 우수성																
◎ 사업화 역량 [신청서 7~10]			25													
- 신규아이템을 활용한 사업화방안 (신규아이템관련 IP확보방안 및 제품화 개발계획, 양산 및 판로확보 및 활용방안 등)																
- 시장규모 및 사업화 계획 (최종 신규아이템에 대한 R&D 로드맵 구축, 투자관련 지원 등)																
- 신규아이템 발굴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(개발 효과 및 활용방안, 사후지원 방안)																
정량평가(20점) + 정성평가(80점)																
100																
가점	◎ 최근 3년간 사회공헌실적				(5)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점수</td> <td>5점</td> <td>4점</td> <td>3점</td> </tr> <tr> <td>건수</td> <td>3건</td> <td>2건</td> <td>1건</td> </tr> </table>				점수		5점	4점	3점	건수	3건	2건	1건				
점수	5점	4점	3점													
건수	3건	2건	1건													

5. 신청안내

가. 신청기간 : 2020년 2월 24일(월) ~ 4월 3일(금) 18시까지 ※ 미달시 연장접수

나. 신청방법 : 화성상공회의소 방문 및 우편접수

(18590)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, 3층 조사진홍팀

다. 신청서류 : 사업공고문 안내된 서류일체

구분	제출서류 목록	제출부수	
필수	신청업체		
	① (서식1)신청서	원본 1부	사본 5부
	② (서식2)사업계획서	원본 1부	
	③ (서식3)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원본 1부	
	④ (서식4)자부담 현금출자확약서	원본 1부	
	⑤ (서식5)평가결과 수락확약서	원본 1부	
	⑥ (서식6)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	원본 1부	
	⑦ 사업자등록증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		사본 1부
	⑧ 공장등록증명서 (민원24 발급)		사본 1부
	⑨ 최근 3년(17~19년) 재무제표(국세청 홈텍스)		사본 1부
	⑩ 최근 3년 건강보험 산출 내역서(17년12월, 18년12월, 19년 12월)	원본 1부	
⑪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(민원24 발급)	원본 1부		
건설팅업체	건설팅업체		
	① 사업자등록증		사본 1부
	② 사업화 전문회사 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서,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[해당 증빙서류]		사본 1부
	③ 최근 3년(17~19년) 재무제표		사본 1부
	④ 신용등급 평가서	원본 1부	
	⑤ 컨설팅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(4대보험 가입증명, 사업실적증명서, 전문인력 자격증)		사본 1부
⑥ 컨설팅 내용 견적서	원본 1부		
해당시	○ 수출실적증명서(신청기업)		사본 1부
	○ 회사소개서, 제품 홍보자료 등 (신청기업, 컨설팅기업)		사본 1부
	○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등		사본 1부
	○ 사회공헌실적(가점)		사본 1부

6. 지원제외

가.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음이 확인된 경우

나. 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

다. 신청서의 내용이 본 사업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

라.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(추천)인 자

마. 부채비율 500% 이상인 기업

※ 지원 후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청 기업에 컨설팅비용 청구 조치 함

7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최종보고회를 통해 합격 업체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함.
- 나.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
- 라.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사전 협의·승인되지 않은 신청서 내용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할 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- 다.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, 향후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8. 상담 및 문의

[화성상공회의소 조사진흥팀]

담당자	연락처	F.A.X.	E-mail
최지애 담당	031-350-7942	031)350-7990	sky7942@korcham.net
하재영 팀장	031-350-7941		swfc@korcham.net